

해 산 및 채 권 신 고 공 고

당 회사는 2019 년 7 월 26 일 사원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으므로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당사료 신고하여 주십시오. 만일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때는 『상법』 제 535 조 제 1 항 및 제 2 항, 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』 제 203 조 제 3 항에 의거, 청산에서 제외합니다.

2019 년 8 월 13 일

코람코제95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

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, 15층(종로1가)

청산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